ESG위원회 운영 규정

2021. 5 .17

신세계건설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
① 이 규정은 ESG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

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결과를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이사회 보고의무는 본 규정 13조에서 정하는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제 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1월과 7월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조 (회의성립)

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ESG경영 전략과 성과, 주요 ESG 현황 및 대응 (기부금 포함)
 - 대외기부 및 후원 (건별 1억 이상) 단,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기부 등 부득이한 경우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으며, 이사회 부의대상인 건은 부의사항에서 제외한다.
- ② 기타 :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활동실적에 대해 정기위원회시 제13조에 따른 간사를 통해 보고받는다.

제 11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조 (의사록작성 및 자료보존)

-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CSR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의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4조 (규정의 개정)

①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